

붙임 2.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법령

구분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p>제15조(영양사의 면허)</p> <p>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u>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u>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p>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p> <p>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u>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u>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양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 제5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호 영양사에 관한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규칙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제7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